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제 회)	

전 자 서 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법 제 처 심 사 를 마 침

1. 의결주문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여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방법, 평가기관 선정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평가기관 전문인력 요건의 변경

- 변호사, 회계사에 대하여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안 별표 1, 전부개정)을 삭제

나. 과태료 부과기준의 변경

-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1차 및 2차 위반시 과태료 상한액(안 별표 4, 전부개정)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의 50% 이상으로 수정

과태료 부과기준(제16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	법 제26조제1항	1000	1,500	2,000
나.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한 자	법 제26조제2항 제1호	250	350	500
다.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법 제26조제2항 제2호	250	350	500
라.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않은 자	법 제26조제2항 제3호	250	350	500
마. 법 제15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폐지 사실 또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게시하지 않은 자	법 제26조제2항 제4호	250	350	500
바.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26조제2항 제5호	250	350	500
사.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법 제26조제2항 제6호	250	350	500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0. 8. 28. ~ 10.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마목을 삭제한다.

별표 제4호 2. 개별기준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7조에 따른 지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	법 제26조제1항	1000	1,500	2,000
나.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한 자	법 제26조제2항 제1호	250	350	500
다.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법 제26조제2항 제2호	250	350	500
라.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않은 자	법 제26조제2항 제3호	250	350	500
마. 법 제15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폐지 사실 또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게시하지 않은 자	법 제26조제2항 제4호	250	350	500
바.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26조제2항 제5호	250	350	500
사.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법 제26조제2항 제6호	250	350	5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자서명법 시행령 [별표 1] 평가기관 전문인력 요건(제6조 관련)	전자서명법 시행령 [별표 1] 평가기관 전문인력 요건(제6조 관련)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을 보유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을 보유
가. "동등학력"이란 고등학교 졸업자는 4년 이상, 2년제 대학 졸업자는 2년 이상 업무경력을 말한다. 나. "정보기술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다. "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가. "동등학력"이란 고등학교 졸업자는 4년 이상, 2년제 대학 졸업자는 2년 이상 업무경력을 말한다. 나. "정보기술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다. "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시스템·네트워크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라. "개인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마.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와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사의 경우에는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바. 동일기간에 두 가지 이상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 하나의 경력만 인정하며, 모든 해당 경력은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해 인정한다.

사. 아래의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대체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시스템·네트워크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라. "개인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마. 삭제

빠마.. 동일기간에 두 가지 이상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 하나의 경력만 인정하며, 모든 해당 경력은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해 인정한다.

사바. 아래의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대체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

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단순 과실에 의한 경우

3)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위반횟수별 과태료
------	----	-----------

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단순 과실에 의한 경우

3)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위반횟수별 과태료
------	----	-----------

	법조문	금액				법조문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6조 제1항	500	1,000	2,000	가.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6조 제1항	1,000	1,500	2,000
나.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표시한 자	법 제26조 제2항 제1호	100	300	500	나.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표시한 자	법 제26조 제2항 제1호	250	350	500
다.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법 제26조 제2항 제2호	100	300	500	다.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법 제26조 제2항 제2호	250	350	500
라.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6조 제2항 제3호	100	300	500	라.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6조 제2항 제3호	250	350	500
마. 법 제15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폐지 사실 또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6조 제2항 제4호	100	300	500	마. 법 제15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폐지 사실 또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6조 제2항 제4호	250	350	500
바.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26조 제2항 제5호	100	300	500	바.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26조 제2항 제5호	250	350	500

사. 법 제20조제2항 을 위반하여 보 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법 제 26조 제2항 제6호	100	300	500	사. 법 제20조제2항 을 위반하여 보 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법 제 26조 제2항 제6호	250	350	5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6446